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577-01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실천편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수탁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매뉴얼 개발	배성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미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집필진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정은자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감수	민병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이현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577-01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전화 02-2100-6000(대)
제작 인디엔피 www.indnp.com

* 매뉴얼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실천편

펴내는 글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며, 관련 사건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2013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8년 228건이던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발생 현황이 2012년에는 661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성폭력 예방교육이 확대되고 경각심도 높아져 신고가 증가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지속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인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장애인 거주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종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지만 ‘장애인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지, 나아가 “장애인 성행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무엇을 성폭력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어려움을 느낀다.” 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 매뉴얼은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부모 및 교사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관계를 맺는 종사자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는 누구보다 장애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고, 가까이서 많은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시설종사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장애인을 지원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없앨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관련된 개념을 분명히 알고 장애인 인권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장애인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매뉴얼의 구성

- 기본편** 주 요 내 용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
주요활용대상 : 부모, 교사를 포함하는 일반국민 모두
- 실천편** 주 요 내 용 :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감수성 키우기 훈련 등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특히 시설 내 장애인의 성행동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의 해석과 성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한 실천들을 다채롭게 다루고 있음
주요활용대상 : 일반국민 및 장애인 시설종사자

본 매뉴얼의 활용방법

- 본 매뉴얼은 장애인 시설종사자가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매뉴얼에서 다루고자 하는 성폭력 예방의 중점대상은 시설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성인입니다.
 - 본 매뉴얼은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본편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 후 실천편을 학습하시기를 권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은 '실천편'을 중심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주제별정보 - 교육정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E-book으로 제작되어 모바일 상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CONTENTS

차례

I. 성폭력이란?

- 10 1. 성폭력의 개념
- 11 2. 성폭력의 피해와 유형

II. 장애인 성폭력 피해 특성

- 14 1. 성폭력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성
- 16 2.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이유
- 19 3. 성폭력 피해 발달장애 여성과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
- 22 4. 성폭력 피해 징후
- 23 5. 성폭력 피해 상담 시 유의사항

III.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 26 1. 평등한 관계 맺기
- 30 2. 인권감수성 키우기
- 34 3. 장애감수성 키우기
- 37 4. 성인식 점검하기

IV. 장애인 성폭력 대처 방법

- 44 1.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 50 2.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권리 및 제도적 지원정책
- 56 3.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가해자) 처벌 내용

V.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절차 62

VI. 성폭력 예방 실전 훈련! 사례별 Q&A

- 68 1. 시설 내 성적 행동과 표현, 어떻게 해야할까?
- 79 2. 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부록

- 90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95 *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20개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 분석 내용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실천편

I. 성폭력이란?

1. 성폭력의 개념
2. 성폭력의 피해와 유형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원하지 않는 언어적, 신체적, 성적 강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신체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성폭력은 현행법에서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공공 장소에서의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직장 내에서의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통신매체를 통한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포르노(음란영화, 도서, 음란만화) 등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 성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1 성폭력의 피해

1차 피해 강간, 성추행 등 직접적인 피해

2차 피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주변의 태도로 인한 피해

3차 피해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위협하는 등 사회적 범죄자가 되는 경우

2 성폭력의 유형

접촉 행위

- 옷 위로 또는 옷 속으로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옷 위로 또는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 구강성교, 성교
- 신체 일부(손가락, 음경)나 물체를 질이나 항문에 넣는 행위(유사성교행위)

비접촉 행위

- 성적인 방식으로 타인을 만지도록 하는 행위
- 관음증(다른 사람의 몸을 훑쳐보는 행위)
-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자위행위 하는 것을 지켜보게 하는 행위
- 성기 부위를 노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만드는 행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전달하는 행위)
-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 배포하는 행위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실천편

II.

장애인 성폭력 피해 특성

1. 성폭력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성
2.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이유
3. 성폭력 피해 발달장애 여성과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이해
4. 성폭력 피해 징후
5. 성폭력 피해 상담 시 유의사항

1

성폭력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성폭력 피해를 당할 위험이 훨씬 더 많은데, 이는 이용하기 쉬운 사람들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우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을 잘 믿지 않거나, 증언할 능력이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다음은 성폭력에 취약하게 만드는 발달장애인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Davis, A. L. (2012).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exual violence, www.thearc.org)

01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장기간 돌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적이다. 화장실 문제, 목욕 같은 개인적인 돌봄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성적으로 혼란스럽거나 착취적인 상황에 취약하다.

02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억압을 받아왔고,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와 행동은 성적존재로서의 기본권을 무시해 왔다.

03

가해자들은 장애인 성폭력이 비장애인 성폭력보다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고 믿는다.

04

장애인은 무성적이거나, 성적 욕구가 없어 폭행당할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폭력피해가 있다고 해도 장애인을 잘 믿지 않는다. 발달장애인은 성적제안을 다루는 기술이 없다. 성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폭력이나 착취의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저항하지 못한다.

05

발달장애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어 애정을 준다고 여겨지는 조작된 관계로 인해 착취에 더욱 취약하다. 애정을 받기 위해 원치 않는 성적인 관계에 끌리기 쉽다.

06

발달장애인들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사전 경고를 알아채거나, 실제적인 폭행에 저항이 어렵다. 자신들의 장애 때문에 늘 규칙적인 삶을 살며 이로서 잠재적인 폭행자가 이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된다.

07

각 개인의 자기보호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주류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이들을 성폭행의 위험에 놓이게 한다.

08

발달장애인들은 아는 사람에 의해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강간당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적 접촉 등의 행위를 좋아하거나 사랑을 주는 행위로 알고록 길들여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닌 애정관계로 인식하며, 가해자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갖거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결정하지 못한다.

201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개발-지역 장애인을 중심으로〉 P36~37 재인용



성폭력 피해에 대해 말하기 어려운 것은 발달장애인이거나 비장애인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은 생활연령에 비해 지적연령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비장애인에 비해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발달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말하기 힘든 요인은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은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 발달장애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성폭력의 구성요건인 협박과 폭행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달장애인은 그동안 주변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의도된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친절한 사람들의 애정표현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해자들이 인지능력이 저하된 발달장애인을 의식화한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성교육 기회의 부재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개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

아동 성폭력의 경우처럼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성폭력 상황에서 단순한 위협을 가할 경우 발달장애인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등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협을 하거나, '부모에게 말해버리겠다. 그러면 부모가 충격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 '너의 가족은 해체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너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욕할 것이다.' 등의 말로 위협하게 되므로 발달장애인은 피해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가해자들은 발달장애인에게 물건이나 돈 등을 주어 친밀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폭력을 애정의 표현이라고 인식시킨다.

가해자들은 먼저 돈, 좋아하는 물건, 과자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적 장애인을 유인하여 성폭력을 한다. 그리고 물질적인 보상을 하거나 특별한 애정을 주는 것처럼 말을 하여 발달장애인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가족관계 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가해자는 장애인을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킨다.**

가해자는 용의주도하게 계획을 세워 행동을 한다. 가족들로부터 피해 발달장애인을 고립시켜 가족들이 말을 믿지 않도록 분위기를 만든다. 이는 나중에 발달장애인이 피해 사실을 말하더라도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도록 가족들을 미리 포섭해 두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하였거나 관찰한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은 무서워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성폭력 피해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거나 폭력현장을 봤다면, 사실을 말했을 때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받을 비난이나 폭력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

누구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이야기해야 할지 모른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진술을 하기는 어렵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성폭력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누구에게 말해야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즉 성폭력 사실에 대해 말했을 때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1 가해자가 여러 명이다.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상담·신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한 명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가해하는 사례가 있다. 반복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신고가 지연되는 것이 성관계를 동의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이다.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이라거나, 또한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폭력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다. 친부, 의부, 친척, 이웃, 남자친구, 동료, 선후배 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드러냈을 때 주변의 보호나 신뢰를 받기가 더 어렵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주치기 쉬워서,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려워서, 성폭력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도 많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가해자의 경고는 쉽게 위협이 된다.

3 피해자가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한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운 사이이거나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관계의 지속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성폭력의 정도가 미약했기 때문인 것도 아니다.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하는 이유는 장애 정도, 개인적 경험 및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발달장애인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하게 되는 이유

- 가해자 외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매우 부족하다.
-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 성폭력 가해 외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과거의 성폭력 경험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았다.
-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믿어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다.
- 가해자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 가해자의 연락을 거부하거나 피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 성폭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4 가해자가 성폭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피해자가 믿는다.

발달장애인은 가해자와 폭력적 관계를 중단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더라도, 사과하고 나면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과 이후 성폭력이 반복되더라도 그 같은 신뢰는 좀처럼 깨지지 않는다.

때문에 피해자는 성폭력 이후에도 가해자와 연락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는 성적 관계에 동의하였거나 성폭력을 용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므로 성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믿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4 성폭력 피해 징후

일상적으로 체크가 필요!

아래와 같은 징후가 장애 여아와 장애 청소년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피해 징후이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눈에 띄게 많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관심을 기울여 그 이유를 꼭 알아내도록 노력한다.

- 성기에 통증을 호소한다.
-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혼자 잠을 자지 못한다.
- 뭔가 숨기는 듯 불안해 보인다.
- 갑자기 너무 많이 먹든지 아니면 식욕이 없어진다.(거식증, 폭식증)
- 갑자기 자위를 심하게 한다.
- 자주 배가 아프다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 이유 없이 화를 내고 불안해하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 이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자주 우울해 보인다.
-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문을 꼭 잠궈 놓는다.
- 머리핀, 핸드폰 줄, 가방 등 못 보던 물건을 가지고 들어온다.
- 용돈이 없는 상황에서 과자, 사탕 등을 많이 사먹고 다닌다.
- TV에 나타나는 이성교제 및 성적 표현에 과도한 관심을 갖는다.
- 동네 할아버지나 아저씨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한다.



01

상담자의 민감성이 가장 중요하다. 민감성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거나, 다시금 폭력 상황에 처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하는 동안 또래에 비해 성에 대해 많이 알고 있거나, 호기심이 많은 경우, 혹은 억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개별상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02

상담에서는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을 재현하기보다는,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알린다. 또한 현재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상의한 후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에게 알려야 하며, 개별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까운 상담소에 연계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실천편

Ⅲ.

장애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1. 평등한 관계 맺기
2. 인권감수성 키우기
3. 장애감수성 키우기
4. 성인식 점검하기



우리 사회의 대부분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장애인으로서 우월감을 나타낸다거나 장애인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동정 또는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여, 장애인에게 불쾌감과 상처를 주기도 한다. 종사자는 거주인을 주체적인 존재로 대하며 선택권과 결정권을 존중하고, 거주인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법을 익힘으로써 서로 평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성폭력은 '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성적인 부분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존중받고, 평등하게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적을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인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선택, 결정에 대해서 존중받고, 일상적으로 평등한 관계 맺기 및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존중과 주체성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성적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쳐 욕구와 거절을 명확히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과 결정을 존중하는 성적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발달장애인을 성숙한 성인으로 인식하고,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성적인 권리를 존중하여야만 적합한 지원과 안내가 가능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의 첫걸음



평등한 관계 맺기를 위한 자기점검

1 나와 거주인의 관계 돌아보기

- ① 우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얼마인가?
- ② 우리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공동생활 형태는 어떠한가?
- ③ 1개 방에 몇 명이 거주하고 있는가?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개인 공간은 어느 정도일까?
- ④ 일과 중 개인 활동에 주어지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주로 거주인은 무엇을 하실까?
- ⑤ 나는 거주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엄마와 아들, 딸과 같다. 언니 동생처럼 지낸다.
엄격하게 선생님과 거주인 사이로 지낸다 등)

종사자가 거주인에게 보이는 특정한 행동이나 경향이 있다면(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렇게 되기까지의 원인이 존재할 것입니다. 나와 거주인이 관계를 맺은 시간과 방식 등을 분석하면서 원인을 찾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 변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거주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갖기

장애인은 사회경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리가 필요하다?

▶ 문제는 사회환경, '관리' 보다는 '존중'이 필요하다!

비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거나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환경과 구조의 문제인 것이지 장애인 개인에게 문제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도 타인에 의해 자신의 삶을 관리, 통제당할 이유는 없으며, 반대로 누구도 타인을 관리, 통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주인의 선택과 자기결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호칭, '편하게' 부르면 될까?

한국에서 무의식적으로 부르는 호칭, 한번쯤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어리다고 쉽게 말을 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편하게 엄마, 언니라고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나이와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호칭이 결정되곤 합니다. 거주시설 안에서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는가'의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연결됩니다. 자연스럽게 편하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이 불리고 싶은 호칭,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을 고민하며 조금 더 서로가 평등하게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4 장애인은 '봉사와 사랑'의 대상일까?

시설 거주인은 봉사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 동등한 주체입니다.

봉사와 사랑으로 거주인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이미 관계는 불평등하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거주인은 봉사와 사랑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주체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종사자 역시 그저 도와주고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복지 노동자로서 그에 맞는 처우를 받고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으며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봉사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말로 인해 종사자가 무엇을 희생해서도 안 되고 거주인이 동정과 시혜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5 장애인은 아프고 도와줘야 할 사람?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동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다양한 몸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TV나 언론에서도 장애인을 '불쌍하고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 그리다보니 이런 생각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꼭 그 사람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동정적인 시선으로 자꾸 바라보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등한 관계를 맺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극복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여기고 '조금 더 노력하면 나올 수 있다.'라는 방식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에 대한 민감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일상적으로 만연되어 있지만, 그러한 차별들은 대부분 차별이라 인식되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또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기 쉽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 함께 풀어갈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 존중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은 자격을 묻지 않는다. 이것은 인권의 첫 번째 성격이다.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서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평등,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그것은 어떠한 조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어떤 자격도 묻지 않는 소중한 권리의 주체라는 뜻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나이가 많은 적든, 어떤 조건도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재구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권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에서 원주민들의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남’이 보이고, 육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란 정의에서, 그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쫓겨나는 사람들,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한 사람들, 절망의 벼랑 끝에서 끝내 낭떠러지로 밀려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린다. 인권의 기준에서 볼 때 미시적인 의식에서부터 거시적인 시스템까지,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인다.

2014. 인권교육 ‘온다’ 강의안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나의 인권감수성은 과연?

인권감수성 체크리스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여성이 해야 할 고유한 역할이다.					
3. 사회적 약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할 뿐이다.					
4. 인권은 고정된 개념이며 어느 시대나 동일하다.					
5. 어떤 경우에는 인권을 제한할 필요도 있다.					
6. 장애인의 문제는 인권적 접근보다 사랑과 봉사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7. 아동은 어리고 판단력이 떨어지므로 보호자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8. 초등학교에 여성교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학생들 교육상 문제가 있다.					
9.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 사람에게 손해에 끼칠 수 있다.					
10. 성소수자(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인권을 존중하면 사회가 문란해진다.					



인권감수성 나는 어떤가요?

10가지 질문이 필요한 이유?

위 질문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10가지 통념들을 통하여 인권관련 이슈에 대한 감수성을 점검해보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답변이 많다면 나도 모르게 사회적 통념에 길들여져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편견을 가지고, 차별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실천하는 종사자들은 무엇보다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민감한 감수성을 가지고 거주인들이 어떤 불편함과 차별을 경험하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권'은 특정한 어떤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 없는 삶을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장애감수성을 민감하게 가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는 '인권감수성'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 '여자는 자고로 ~~ 해야 한다.' 등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면 인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장애인은 ~~ 해서 안돼.' 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인권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며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시간을 꼭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 - 차이를 인정하기

우리 안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흔히 부끄럽고 숨겨야 할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도 않고,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숨길 수는 있어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하지 못하는 것일 뿐, 서로 알고 있으면서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말 역시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단 차이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선 서로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한다’는 것도 사실 대단히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넌 그러니? 난 이래.’ 이런 한 마디 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말을 해야 할 것이고, 듣지 않았던 사람은 들어야 진정한 인정으로 나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원이 없고 누군가에게는 자원이 있다면 그것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다른 부분은 그 자체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흔히 장애인은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서' 또는 '언제나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장애인의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네가 잘 몰라서 그런다”라고 하거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니깐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은 누군가의 ‘관리나 통제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기존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장애를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며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 또한 다른 몸의 차이를 인정하며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차별 없는 세상임을 잊지 말자.

나의 장애감수성은 과연?

장애감수성 체크리스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모르 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장애인은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사람이다.					
2. 발달장애인은 나이보다 미성숙하여, 자기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도와주어야 한다					
3.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거주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4.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거주인의 사생활은 되도록 많이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장애인이 자립생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증장애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 장애인의 욕구대로 무언가를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통제는 불가피하다.					
7.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자기결정을 하기 어렵다.					
8. 경증 발달장애인은 거짓말을 잘한다.					
9. 장애인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간다.					



장애감수성 나는 어떤가요?

장애감수성 확인하기

위의 질문들은 종사자들이 거주인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닌,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함께 자리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답변이 많았다면 오랜 시간 종사하다보니 장애인에 대한 어떤 통념과 규정이 생긴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의 문제가 어떤 사회 환경적 배경에서 발생하는지,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굳어진 편견이나 통념이 당사자들의 욕구와 의견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론도 이를 반영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통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경계하며 스스로의 통념에 대해 질문하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성을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며, 그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성·비장애·이성애 중심적인 기존의 규범적 성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장애인의 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규범적인 통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대안과 가능성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① 나의 성인식 점검하기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나'입니다.

나의 자위는 _____
 나의 성욕, 성충동은 _____
 내가 성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_____
 내가 성적으로 자극받게 될 때는 _____
 남성의 성적 욕망은 _____
 여성의 성적 욕망은 _____

② 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점검하기

장애인의 자위는 _____
 장애인의 성욕·성충동은 _____
 장애인이 성적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_____
 장애인이 성적으로 자극받게 될 때는 _____
 장애남성의 성적 욕망은 _____
 장애여성의 성적 욕망은 _____

2014.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성가치관 점검' 빈칸 리스트 일부 인용

성인식과 나의 관점 점검

나의 성인식은 장애인의 성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장애인의 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며 생각해 볼 때, 때론 나의 성규범을 거주인에게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나? 혹은 나에게서 인정되는 욕망과 실천이 거주인에게서 금기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1, 2번의 질문을 통해 나의 성인식이 어떠한 거주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결하여 고민해 봅시다.

이 과정은 문제의 원인을 거주인들에게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거주시설이라는 공간, 함께 하는 종사자들 모두에게서 함께 찾고 해결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③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질문 해보기

- 나는 자위를 하는가?
- 거주인들이 자위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 자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한다면 어떻게 할까?
- 집단 생활을 하는 시설 내에 자위하는 방을 따로 두어야 하는가?
- 과도한 자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 자위하는 장면을 갑자기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다른 방식의 질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

3번의 질문 방식은 1, 2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자위’라는 현상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판단, 행위의 원인과 당사자의 욕구, 문제를 풀어가 는 근본적인 방식, 내가 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중간과정들을 통해서 종사자는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해결방식을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위를 어떻게 덜하게, 못하게 할까?’라고 묻는다면 이 중간과정의 질문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시설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나와 같은 욕구를 가진 존재로서 바라보며 그들의 성적 욕구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체크리스트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자위를 빈번하게 많이 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					
2. 여성은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동성 간의 연애 혹은 섹스는 이상한 것이다.					
4. 발달장애인은 성적으로 과잉된 행동을 한다.					
5. 발달장애인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					
6. 발달장애인도 연애는 할 수 있지만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					
7. 발달장애인이 임신할 경우 장애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8. 발달장애인은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수 없다.					
9.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면 성폭력이 아니다.					
10. 성교육을 통해서 오히려 성적으로 자극 받고 문제가 발생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식 확인하기

옆의 체크리스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답변이 많이 나왔다면 평소 발달장애인의 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거나 발달장애인의 성을 ‘문제적인 행동’으로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달장애인이 표현하는 의사를 좀 더 잘 파악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장애인의 상황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일상을 함께 하는 시설종사자들의 성인식에 대한 감수성과 민감성에 대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실천편

IV.

장애인 성폭력 대처 방법

1.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2.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권리 및 제도적 지원정책
3.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가해자) 처벌 내용



1 성폭력 피해자 권리현장

일상적인 권리

- ① 성관계가 아닌 폭력의 피해자로 대우받을 권리
- ② 순결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③ 어떠한 상황이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권리
- ④ 불면, 불안, 악몽, 두려움, 초조함, 분노 등 피해 후 증상을 갖고 표현할 권리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
- ⑤ 피해에 대해 주변인에게 말할 권리 또한 말하지 않을 권리
- ⑥ 성폭력상담소에서 비밀을 보장받으며 전문적 상담을 받을 권리
- ⑦ 피해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
- ⑧ 두려움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권리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 ① 직업, 나이, 이전의 성경험, 피해 시의 상황, 가해자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권리
- ② 사건과 관련된 질문만 받을 권리
- ③ 이전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④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⑤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권리
- ⑥ 수사, 재판과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가족, 변호사, 상담원 등과 함께 배석할 권리
- ⑦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권리
- ⑧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울 경우 가해자의 퇴정을 신청할 권리
- ⑨ 가해자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의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고 보상을 요구할 권리

진료 과정에서의 권리

- ① 병원에서 검사받는 동안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을 권리
- ②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식과 배려가 있는 의료진을 연계 받을 권리
- ③ 모든 검사과정, 서류 절차 등에 관해 쉬운 말로 설명 들을 수 있는 권리
- ④ 진료 이후 예상되는 증상들을 충분히 알 권리
- ⑤ 친구, 가족, 상담원 등이 진찰실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 ⑥ 성폭력 피해에 관련한 증거물 수집과 진단서 발부를 요청할 권리
- ⑦ 진료결과에 대한 기록을 발부받을 권리
- ⑧ 생존자가 사건 당시, 혹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몸의 이상과 징후 등에 대하여 거리낌없이 말하고 그것을 성폭력 피해로 인정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보도 과정에서의 권리

- ① 사건 보도 시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
- ②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 ③ 인터뷰 전 보도 이후 예상되는 2차 피해에 대해 충분히 설명 받을 권리
- ④ 보도 과정에서 피해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생존자로 보여질 권리
- ⑤ 남성 중심적 통념에 근거한 인터뷰 질문을 받지 않을 권리
- ⑥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영상이나 멘트로 대상화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인격적 주체로서 배려 받고 존중받을 권리
- ⑦ 단지 취재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도내용과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
- ⑧ 취재와 인터뷰에 응할 권리, 응하지 않을 권리
- ⑨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원하지 않는 인터뷰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2 장애인 피해자 인권옹호

옹호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 옹호자는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실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야 한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의 진술과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 ☺ 옹호자는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의 역동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피해 장애인과 돌봄 제공자의 관계, 피해 장애인과 가해자의 관계, 피해 장애인과 주변 환경체계들과의 관계, 환경체계들 간의 관계 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 ☺ 옹호자는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자원을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 장애인의 가족과 친지, 이웃, 직장, 병원, 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종교기관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환경체계들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협력을 적극 구한다.
- ☺ 옹호자는 가해자, 가해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 등 피해 장애인을 압박하는 환경체계들의 역동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대결해야 한다. 피해 장애인을 압박하는 환경체계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다.

☹️ 옹호자는 환경체계의 변화가 힘든 작업이며 인내와 실망, 간간의 성공을 포함한 오랜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 옹호 과정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옹호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 즉 옹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공 요인들을 생각해보고, 피해 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했다면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 정보 부족, 예기치 않은 장애물, 전략 실수 등을 점검해보고 경험에 기초한 새로운 옹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장애인 피해자 인권옹호의 원칙

개별적 접근

옹호자는 피해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접근해야 한다. 옹호자는 무엇보다 개별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특성과 장애인의 인지, 정서, 행동, 사회 기능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검토해보고,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 기타 주변 지원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은 비장애인과 다를 수 있으며 장애 특성과 개별 장애인의 기능 수준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과 양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예 : 가족, 친지, 보조인 등)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Holder, Robinson & Frost, 2011). 옹호자는 피해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사람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한지,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12. 황지성 외,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특성과 법률조력인의 역할> (미발간)

최소 제한적 접근

옹호자는 피해 장애인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최소 제한적 접근(the least restrictive approach)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별 장애인에게 최소 제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장애인과의 면담 일정과 장소를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배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면담하는 경우에는 면접 시간을 여유 있게 배정해야 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면담하는 경우에는 면담 장소의 접근성에 대해 사전에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장애인의 주체성 강조

장애로 인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이 주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칫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 가족, 친지, 사회복지사, 교사, 종교인, 활동보조인, 후견인 등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피해 장애인이 오히려 타자화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 장애인의 언어와 표현을 기반으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장애인의 목소리가 수용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원조관계의 형성과 유지

옹호자는 장애인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포'는 전문 원조자와 원조대상자 간의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를 의미하며,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필수적이다. 즉 옹호자와 피해 장애인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지 못한다면, 원조 혹은 옹호의 효과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

라포는 옹호자의 장애인에 대한 존중, 공감(empathy), 개방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옹호자는 '장애인'을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해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하고, 장애인의 입장이 되어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겪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성폭력 피해 경험을 들을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요구(needs)를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함으로써 장애인을 적극 이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상황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며, 나아가 옹호자 자신이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가 편안한지, 자신이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어떤 보람을 느끼는지 등에 대해 솔직하고 진실한 태도를 장애인에게 보여줄 때 원조 혹은 옹호 관계가 효과적일 수 있다.

자원 동원과 조직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은 성폭력에 더욱 취약할 뿐 아니라 성폭력 경험 이후에도 2차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 옹호자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면 주변의 지지 체계와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이미 여러 지지 체계와 자원이 관여하고 있을 때는 이를 조직화함으로써 피해 장애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 법적권리

보호받을 권리

권리내용	법적규정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제23조) 피해자의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제24조) 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규정(제29조): 사적인 비밀 침해금지와 편안한 재판환경과 재판횟수 최소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제7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과 신변 보호 등에 대한 규정(제9조)
비공개심리 (법원 내 증인지원실 설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행정절차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및 조력자 필요 규정(제2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및 가족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비공개심리와 법정외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제31조) 피해자 증인출석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증인지원관 및 증인지원시설 마련(제32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형사소송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판시 피고인을 퇴정한 후 피해자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 (제297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증인신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방식 마련 (제40조)

권리내용	법적규정
신뢰관계인 동석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제34조) <p>형사소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규정(제163조의2)
피해자변호사, 진술조력인 등 조력	<p>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변호사 선임 및 역할에 대한 규정(제27조) <p>진술조력인 등 조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및 만13세 미만 피해자 진술조력인 참여규정(제36조, 제37조) ※(대법원)성폭력 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참조)

절차에 참여할 권리

권리내용	법적규정
피해자 진술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권	<p>형사소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및 가족이 진술신청 시 신문을 할수 있도록 규정(제294조의2) 피해자가 장애인 등의 이유로 법정대리인을 통해 기록을 열람등사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제294조의4) <p>범죄피해자 보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제8조)
자신의 사건관련 정보,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 받을 권리 등	<p>형사소송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가 피해자에게 사건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 (제259조의2) <p>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제10조)

보상권

권리내용	법적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구조금 신청권, 배상명령 신청권	범죄피해자 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에 의해 피해자 주거비, 생계비 등을 신청가능 · 국가배상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해 피해자는 국가기관에 의한 피해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구조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규정(제27조) · 피해자 법률구조에 관한 규정(제7조의2)

2 피해자 지원정책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운영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1366	긴급상담(24시간) 서비스연계 일시보호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원스탑센터 등)	초기수사지원 상담, 의료, 심리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 (단, 해바라기센터는 아동청소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지원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예방활동 등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4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상담 및 숙식제공 학업, 취업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피해자	장애인피해자 보호시설(7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통합센터, 성폭력상담소, 지자체 등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치료 등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기간은 2년단위로 의사소견서 첨부필요

성폭력 피해자 간병비 지원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통합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최대 1개월, 3백만원이내 지원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간병 지원이 어려운 사람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사업수행기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센터 등)	최대 6개월, 3백만원 이내 지원	만13세 미만 성폭력 피해 아동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지자체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친족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서류 및 확인사항 문의

무료법률 지원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민사소송대리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지원 (변호사 선임) 법률상담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변호사 제도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해당 검찰청	포괄적 법률대리	성폭력 피해자	사건접수 시 선임가능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법무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 참여	만13세 미만 및 장애인 피해자	사건접수 시 선임가능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운영주체	지원서비스	지원대상	비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검찰청)	주거 및 생계비 등 지원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지원정책

3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가해자)



처벌 내용

1 형법

조문	죄명	형량
제297조	강간죄	3년 이상
제297조2	유사강간죄	2년 이상
제298조	강제추행죄	10년 이하,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제299조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제297조와 298조와 동일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제301조2	강간 등 살인·치사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
제302조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간음죄	5년 이하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감호하는 자가 구금을 위력으로 간음 시 7년 이하
제305조	만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추행죄	제297조, 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301조2 동일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	죄명	형량
제6조	1항 : 장애인 강간죄 (형법 제297조에 의한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2항 : 장애인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2)	5년 이상
	3항 : 장애인 강제추행죄	3년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4항 : 장애인 간음죄 및 추행죄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이용 간음 및 추행)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형량과 동일
	5항 : 장애인 간음죄(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이용 간음)	5년 이상
	6항 : 장애인 추행죄 (위계 또는 위력 이용 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죄명	형량
제8조 *가해자 : 19세 이상 피해자 : 13세 이상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3년 이상
19세 미만 장애인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죄	10년 이상 또는 1천500만 원이하 벌금

4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실천편

V.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절차

01

피해발생 및 인지



지원구분

지원절차

상담, 신고
여부

- ① 피해자의 의견우선
- ② 피해내용 확인(목격자 등 주변인 확인)
- ③ 1366 및 인근 경찰 신고
- ④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 ⑤ 피해내용에 대해 관련기관에 정보제공

시설종사자 역할

- 성폭력사건 인지 시 신고의무자 고지
-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 내 노력
- 신속한 대응
- 시설 내 피·가해자 분리조치
- 시설 내 사례회의

02

상담지원



지원구분

지원절차

지속상담,
초기지원
서비스
제공

- ① 전문기관(장애인성폭력상담소 등) 연계
- ② 초기 의료서비스 제공(산부인과, 정신과 등)
- ③ 경찰수사 동행(녹화진술 시 신뢰관계인 동석)
- ④ 변호사선임 및 진술조력인 선임 등 고지

시설종사자 역할

-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해 소통하기
- 피해자 최초 구술내용 정리하기
- 피해자 가족에게 정보 제공하기
- 상담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건 조성하기

03

의료지원



지원구분

지원절차

치료비
간병비

- ① 신체적, 정신적 치료서비스 내용 확인
- ②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 ③ 산부인과적 검사 및 치료
(낙태 필요 시 상담소를 통해 상담사실 확인서 의뢰)
- ④ 기타 상해진단 및 치료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가능

시설종사자 역할

-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 치료비 지원 요청
-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시설과 지원기관 간의 소통과 공유
- 피해자에게 진행되는 상황 설명하기

04

법률지원 지원정책 참조



지원구분

지원절차

피해자
변호사
선임

- ① 관련기관(통합센터,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
- ② 피해자 변호사에게 피해자의 장애 특성 및 상담내용을 공유
- ③ 진행되는 법률대리 활동에 대해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무료법률
구조

- ① 구조기관 확인
- ② 민사소송 지원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이 안 된 경우 법률구조 신청
- ③ 피해자에게 정보 제공

시설종사자 역할

- 피해자 변호사에게 시설의 특성과 피해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리기
- 시설에서 2차 피해 발생 시 변호사에게 알리기
-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하기

05

수사지원



지원구분

지원절차

경찰, 검찰
수사
모니터링
및 대응

- ① 장애인 피해자는 녹화진술로 피해 내용 확인(원스탑지원센터 등 통합센터에서 진행)
- ②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사건배당(담당경찰 소통)
- ③ 담당경찰에게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 ④ 검찰송치여부 확인
- ⑤ 진술조력인 참여여부 확인
- ⑥ 담당검찰에게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한 정보제공
- ⑦ 기소여부 확인(불기소 시 불기소처분통지서 확인후 대응)

시설종사자 역할

- 담당경찰 및 검찰 연락처 확인
- 피해자 동행하기
- 피해자에게 상황 설명하기
- 시설에서 2차 피해 발생 시 담당경찰 및 검찰에게 연락하여 가해자 및 가해자측 접근금지 요청하기

06

재판지원



지원구분

지원절차

재판모니터링
및 대응

- ① 공소사실 확인 ② 재판모니터링
- ③ 피해자의 장애 특성에 대해 재판부에 정보 제공
- ④ 피해자 증인출석시 동행 및 지원(증인지원관 제도 활용)
- ⑤ 판결문 확인 후 피해자에게 설명하기

시설종사자 역할

- 재판부 연락처 확인 • 피해자 동행하기
- 피해자에게 상황 설명하기
- 탄원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재판부에 알리기

07

보호 및 역량강화



지원구분

지원절차

- ①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참여
- ② 피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자조모임 등) 참여
- ③ 피해자 주변인(시설종사자 등) 상담 및 교육
- ④ 지역사회 자원연결

피해자 회복

시설종사자 역할

- 회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지원
- 사례회의를 통해 시설 내에서 발행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마련
- 가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 일상적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실천편

VI.

성폭력 예방 실전 훈련! 사례별 Q&A

1. 시설 내 성적 행동과 표현, 어떻게 해야할까?
2. 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Q&A〉를 읽기 전에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며 발달장애인 역시 성적 욕구, 기능, 발달의 정도가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성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교육의 기회가 부족하고, 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시설 내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문제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 사례들은 시설종사자들의 문의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필자의 인식을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내의 상황과 맥락에 맞게, 앞으로 다양한 방향에서 발달장애인의 성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시설 내부에서도 토론되고 마련되길 바랍니다.

1

시설 내 성적 행동과 표현,
어떻게 해야할까?



사례 01

Q

생활교사는 A씨에게 전달할 말이 있어서 A씨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렸으나 아무 답변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A씨가 B씨 성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두 남성은 지적장애 성인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고, B는 A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편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말을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우선 A와 B를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여 둘 사이의 관계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또는 동성 간 연애로 선불리 한정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어떻게 상황이 진행된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 후에 둘 사이에 지적 능력의 차이, 신체적 상태, 시설 내 두 사람의 위치 등을 고려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연계가 중요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행동을 모르는 척 넘어가거나, 문제 상황으로만 한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A와 B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상담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례 02

Q

지적장애 여성 C는 J와 동성이고 같은 방을 사용한다. 둘은 싸우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어느 날 C가 누워있는 위에 J가 몸을 포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동성애적 성적 욕구는 개인의 성향일 뿐, 소수자의 성 역시 마땅히 사회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성적 지향이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C와 J의 행위가 서로를 억압하거나,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 능력 차이에 의해 강요된 상황인지, 야한 동영상 등 잘못된 정보에 의해 학습한 결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면담을 진행 할 경우, 오히려 두 여성의 실제욕구와는 다른 '면담자의 시각'이나 요구에 부합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성애적 성향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다양한 만남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적절한 만남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상담 및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사례 03

발달장애인 G와 Z은 성인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양쪽 보호자는 둘 사이가 발전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스킨십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몰래 어두운 구석에서 키스하는 것을 발견했다.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말을 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발달장애인의 삶은 전반적으로 타인의 지원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고, 성적 권 한도 부모, 교사, 생활교사,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 개인의 인식과 통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할 경우 보호자 가족과 시설관계자 간의 성인식 차이에 의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보호자와 기관 종사자가 담합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개인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노력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기관종사자의 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적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일방으로 설득 하거나 주장하기 보다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성적 관계를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고민을 나누며, 다양한 자원을 연결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성인 발달장애인 커플은 원하는 교제를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 04

L은 23세의 발달장애 여성으로 연애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며, TV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나오면 얼굴을 붉히면서도 또 다시 보고 싶어한다.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고, 남성 생활자들과 몸을 부비기도 하여 주의를 받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L이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적장애 남성 거주인과 서로 좋아서 성행위를 했다고 말하는데 사실여부는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Q



A

인간 발달과정에서 성인기는 사랑, 연애, 결혼 등 상대자와 관계 맺기를 통해 친밀감의 욕구를 해결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고, 교제의 결정권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친밀감의 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방송매체에서 보여주는 현실가 능하지 않은 정보를 현실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친절하게 대하면, 자신을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의도된 표현을 그대로 믿어서 성폭력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발달장애 여성의 성적 욕구, 친밀감의 욕구가 생활시설 내에서 어떻게 분출되었고, 어떤 시선에 의해 억압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랑과 책임의 부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 여성 및 상대자와 개별면담을 통해 동의한 성적 행위인지를 확인하고,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할지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임신에 대한 당사자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의논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족을 이루고 출산·양육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고, 출산을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동의된 성관계이기는 했지만 낙태를 원할 수도 있고, 지속적인 관계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성 혼자만 출산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는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결정이 장애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확정될지라도 결정과정에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이들 장애인 커플에 대한 성교육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피임 교육은 실천 가능하도록 지원되어야 합니다.



Q

사례 05

발달장애인 30대 남성인 K가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자위를 한다고 같은 방을 쓰는 발달장애인 M이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 뒤 M 역시 밤에 자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생활교사는 자위를 제지해야 할지, 돌을 떨어뜨려 놓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인간의 행동은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M의 행동 배경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M이 K의 자위행위를 불편해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불편해하면서도 M 또한 자위를 하는 이유와 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위를 ‘허락 또는 제재’라는 이분법적 인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위를 억압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사적 공간이 없는 시설 내 환경, 장애인의 성적 발달 및 행동을 원치 않는 보호자, 종사자, 기관장들의 인식을 점검해보고, 성적자기결정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성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사례 06

지적 장애인 F는 방문자들에게 친근하게 먼저 다가가 인사도 잘 하고, 시설 안내도 곧잘 한다. 방문자가 칭찬을 하거나 익숙해진 것 같으면 스킨십을 시도하고, 가끔은 정도가 지나쳐서 방문객 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교감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방문객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대다수는 다른 사람이 스킨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스킨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되어야 합니다.

첫째, 시설거주 장애인의 친밀감의 욕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고민과 함께 친밀감의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시설 방문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 방문자의 행동규칙 등 사전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정의 대상으로 여겨 쉽게 스킨십을 허용하거나, 지나친 경계감으로 장애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사회적 규범을 장애인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방문객을 지도한다면, 한정된 공간에 있는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례 07

Q는 종종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으로 여자생활교사 Y가 가까이 있으면, 바지 위로 자신의 성기를 문지른다. 인지수준이 낮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의 행동을 못 본 척 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지 않지만 Y를 보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시설 내 다른 종사들은 오히려 Y가 민감한 것 아니냐며 압박을 주기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먼저 장애로 인지 수준이 낮을 경우 '본능적으로만 행동한다'고 생각한 생활교사 Y의 편견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 남성의 행동을 외면하고 말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자신의 성인식을 점검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Y 앞에서만 성기를 문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생활교사가 제제하지 않기 때문에 해도 되는 행위로 인식했거나 '해도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Y에게 자위가 문제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하되 공적 및 사적 장소를 구분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고, 타인이 있을 때 하는 성행동을 교정해야 함을 인식하도록 일관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풀어야 할 다른 한 가지는 생활교사 Y가 장애인의 성행동 및 시설 내 다른 종사자들의 인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Y가 느끼는 불편은 여성이라면 대부분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사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장애인을 무성적 존재 혹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방치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적인 존재이고, 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만 지적장애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성교육을 받지 못해 올바른 성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차원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Q

사례 08

H는 생활교사나 사회복지사에게 다가와 팔꿈치를 만지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한다.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지만, 말뜻을 이해하지 못해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지적 장애인은 다른 사람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포옹하고 행동하는 등 통제하는 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두어야 할지,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을지 사회적 경계선을 파악하지 못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스킨십은 친밀함의 욕구이며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중증장애인 역시 성적인 존재이며, 성적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H는 사적인 경계범위를 넘어선 행동을 한 것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언어적·비언어적,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규범, 가치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사례 09

사회복지사 N은 거주인들과 친구처럼 지낸다. 그 중 발달장애인 W의 접근이 싫지 않다. 귀엽고, 착하고, 말도 잘 듣기 때문에 장애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어린 동생 같은 느낌이라서 쓰다듬어주기도 했다. W도 N을 좋아하는지 옆에 앉으면 손도 잡고, 안기기도 하는 등 스킨십이 잦아지고 있어서 사람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Q



A

종사자는 자신이 돌보는 클라이언트와 사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N은 공적 활동을 해야 할 근무지 내에서의 사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경계를 무너뜨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경계가 필요했음을 깊이 성찰하고, W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단지 발달장애인의 문제 행동으로 취급하여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며, 둘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 N의 행동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W의 행동도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처나 거부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 맺기를 위한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례 10

S는 지적 및 신체적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으로 도움을 받아야 목욕이 가능하다. 어느 날 목욕을 지원하는 동성의 종사자가 S의 가슴이나 성기를 손끝으로 장난처럼 만지거나, 튕기는 행위를 보였다. 당사자인 S는 웃기만 할 뿐 싫은 내색도 없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중증장애인의 경우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기 하기 때문에 수발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강력한 권력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의 목욕 수발 보조는 사랑하는 연애관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의 신체를 장난처럼 대하거나, 성기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성폭력입니다.

장애인이 비록 웃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돌보는 종사자에게 온전히 신체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의도적인 성폭력 행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같은 종사자 입장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심적으로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가해당사자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제재해야 하며, 기관에 중지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한다면? _____



사례 01

시설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Q



A

성폭력 피해가 발생되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 권리(녹화진술, 법률조력, 진술조력, 치료비지원, 쉼터제공 등)를 숙지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장애인 성폭력전문상담소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피해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담소를 통해 상담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속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사례 02

생활교사는 지적장애 여성 A씨가 같은 거주인인 지적장애 남성 B씨 및 시설종사자 C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다. 생활교사는 A씨가 신고할 의지나 처벌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런 경우 신고의무자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A

현재 우리나라 실정법에서 성폭력사건은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신고 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장애로 인해 그 의사가 불완전한 경우에, 피해사실을 인지한 사회복지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성폭력이 지속될 수 있고,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이 가려질 수 있음을 숙지하길 바랍니다. 또한 신고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건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 분리조치와 함께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03

시설종사자는 어느 날 지적장애 남성 A씨가 같은 거주인 지적장애 남성 B씨를 성폭력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을 신고하려고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해의 지원을 바라기보다, 시설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가해자의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전원조치를 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 보호자와 조용히 합의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시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이런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분명하고 피해를 목격한 것이 명확하다면 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설에서 나가는 것이 더 두렵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피해자 치유를 위해서도 신고를 하고 가해자는 전원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당장 갈 곳이 없다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고 지속한다면, 2차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조치는 피해자가 생활하는 공간으로부터 접근금지하는 물론,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적 안정의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례 04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남성 A씨는 시설외부 혹은 시설방문자에게 강간 및 성추행을 하는 가해자이다. 시설 안에 피해자는 없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는 가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Q



A

현재 법상으로 가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가해자를 상담하였을 때, 가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의 주장을 하지 못하였거나 상대방이 행동을 오인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이 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는 일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건의 정황을 살펴 시설에서 의사소통을 조력하거나 장애 특성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례 05

시설종사자 A씨는 같은 종사자인 B씨가 시설거주인 지적장애 여성 C씨를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래서 A씨는 B씨를 신고하려고 했지만 시설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B씨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 같아 갈등이 되었다. 이런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A

시설종사자에 의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성폭력을 한 종사자가 시설 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인가에 따라 신고에 대한 부담감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B씨가 시설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설 측에서도 쉽게 A씨를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 신변보호 조치 요청과 함께 신고를 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격한 정황을 정확하게 기록해두어 서면으로 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06

시설에 생활하는 20대 발달장애인 여성인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30대 비장애 남성 B씨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B씨가 벗은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고 해서, A씨는 자신의 가슴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 그러자 B씨가 A씨의 사진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A씨는 걱정이 되어 시설종사자에게 상담을 했다. 이런 경우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

Q



A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거나 배포하게 되었다면 성폭력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배포를 하지 않은 채 협박만을 할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여부도 확인해야겠지만 이러한 행위가 향후에 어떤 상황을 만들게 될지에 대해 A씨에게 설명하고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사례 07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 여성 A씨는 성폭력에 의해 임신을 했다. 가해자는 여러 명으로 추정이 된다. 이 경우에 성폭력에 의한 낙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A

성폭력에 의한 임신사실이 확인되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 24주까지만 수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 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전문기관(통합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에 의뢰하여 ‘성폭력 상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08

지적장애 여성 A씨는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 일정정도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다. 이런 경우 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의심해 봐야 하는 것인지 성매매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Q



A

이런 경우 A씨가 채팅을 통해 남성을 만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정적인 성경험이 학습된 것인지, 애초의 성관계가 성폭력의 경험으로 시작되어 성관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인지 또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를 성매매의 방식으로 하는지 등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관계 시에 일방적이거나 폭력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왜 그 행위를 하는지’에 집중해서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09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Q



A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 형량에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합의금액에 따라 집행유예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0

가해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이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Q



A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형법 제10조)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능력이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농아자인 경우에는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법원이 장애인 가해자에게도 처벌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실천편

부록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20개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 분석 내용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안내





장애인성폭력상담소(2014년 현재)

지역	상담소명	연락처
서울	사)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02)3013-1367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2)3675-4465~6
	한국학교상담복지센터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02)902-3356
	한사회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02)2658-1366
인천	사)인천광역시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2)424-1366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2)504-5479
경기	사)경원사회복지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755-2526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031)840-9203~4
	의왕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031)462-1366
대전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2)223-8866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부설 한발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2)637-1366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 장애인 성폭력아산상담소	041)541-1514~5
충남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1)592-6500
충북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43)224-9414~5
광주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2)654-1366
경북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4)843-1366
	사)국제문화진흥원부설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4)443-1366
경남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55)241-5041
부산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 성폭력상담소	051)583-7735
울산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 성폭력상담센터	052)246-1368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3)223-3015
전남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061)284-4767
제주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064)753-4980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053)637-6057



성폭력 피해 지적 장애인을 위한 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기관수	전국 171개소(장애인 24포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기능	피해자 및 가족상담(개인, 집단, 방문 상담 등), 의료, 법률, 형사고소, 소송, 동행지원,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연계 등 전 연령대 성폭력 피해자(남성 포함)
지원대상	전 연령대 성폭력 피해자(남성 포함)
기관특성	1차 상담 지속상담 및 사례관리
운영시간	09:00~18:00(주중)야간 및 휴일 1366으로 착신

긴급전화 1366

기관수	전국 광역시도, 18개소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기능	1차 긴급상담,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112, 119 연계
지원대상	전 연령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기관특성	긴급피난처운영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상담전화	전국 1366, 휴대폰(지역번호 +1366)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기관수	전국 대도시 8개소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기능	긴급구조 지원체계, 성폭력 피해 아동, 청소년, 여성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사건조사, 법률, 의료,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대상	전 연령대
기관특성	원스톱 센터와 해바라기아동센터 통합기능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해바라기아동센터

기관수	전국 대도시 10개소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기능	피해자 의학적 진단, 심리상담, 의료, 법률지원
지원대상	19세 미만 청소년, 지적 장애인
기관특성	소아정신과 의사 상주, 임상심리전문가, 심리평가
운영시간	09:00~19:00 야간 당직시스템



성폭력 피해 지적 장애인을 위한 전문기관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기관수	전국 대도시 17개소
주요기능	피해 사건 접수, 피해자진술녹화, 의료적조치(산부인과, 증거채취 등)
지원대상	성·가정·학교 폭력 및 성매매 피해자
기관특성	여성경찰 상주, 피해자진술녹화, 경찰서연계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향후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해바라기센터'로 통합 될 예정임

피해자보호시설

기관수	전국 19개소(장애인 9개소 포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기능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회복과 사회복귀 지원, 일상생활, 사회적응훈련, 의료지원, 학교전학, 성교육, 성폭력예방, 재발방지 교육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기관특성	피해자 치유,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상담전화	연락처 미공개

참고 : 여성가족부(www.mogel.go.kr)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20개소)에 접수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상담통계 분석 내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2013). 장애인상담소권역 참고자료

표1.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단위:명)

구분	총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외 피해자 지원
전체(장애인+비장애인)	3,875(100%)	1,962(51%)	1,913(49%)
장애인	2,675(100%)	1,673(63%)	1,003(37%)



2013년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되어 지원한 피해자(비장애인 포함)는 총 3,875명이며 성폭력 피해자는 1,962명이다. 이중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1,673명으로 성폭력을 포함해 폭력피해 장애인 피해자의 63%를 차지한다. 전국 20개의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1,673명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수사법적지원을 비롯해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보호시설입소 연계 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2.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장애유형(단위:명)

계	신체적 장애(240명, 13.7%)				정신적 장애 (1,359명, 81%)		기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정신	
1,673 (100%)	79 (4.7%)	52 (3%)	49 (2.5%)	60 (3.5%)	1,227 (73%)	132 (8%)	74 (4.3%)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피해자의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장애인보다 정신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지적 장애인 피해자는 전체 피해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1,227명이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었다.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성은 '지적장애' 특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적장애 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회가 지적 장애인을 ‘영원한 아이’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지적장애 여성은 보호와 통제의 삶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지적 장애 여성은 사회구성원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타인에게 쉽게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넘기거나 뺏기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3.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연령수(단위:명)

성별	계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5세 미만	65세 이상	미파악
여	1,618 (100%)	5 (0.3%)	66 (4.1%)	380 (24%)	984 (60.1%)	47 (3%)	136 (8.5%)
남	55 (100%)	-	7 (13%)	13 (24%)	25 (45%)	-	10 (18%)
계	1,673 (100%)	5 (0.3%)	73 (4.3%)	393 (23.4%)	1,009 (60%)	47 (3%)	146 (9%)



성폭력 피해 장애인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만13세 미만 장애 아동은 78명(4.6%)이며, 이중 장애남아가 7명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청소년(13~18세)은 393명(23.4%)으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전체 피해자의 28%(471명)를 차지한다. 전체 피해자의 72%는 성인이다. <표2>에서 지적 장애인 피해자가 73%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성인 지적장애 여성 피해자가 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된 지적 장애인이 제도교육 이후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적 관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표4. 장애인 피해자와 가해자와 관계(단위:명)

계 1,914(100%)

(의) 부모형제	친족 및 친·인척			배우자	애인	직장 관계자	동네 사람
	4촌 이내 혈족	2촌 이내 혈족	기타				
155 (8%)	67 (4%)	28 (1.5%)	28 (1.5%)	6 (0.3%)	55 (3%)	100 (5%)	554 (29%)

동급생 선후배	교사 강사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서비스 제공자	채팅 상대자	모르는 사람	기타
192 (10%)	29 (1.5%)	16 (0.8%)	37 (2%)	20 (1%)	147 (7.5%)	243 (12.6%)	237 (12.3%)

친밀한 관계 혹은 평소에 알고 있는 관계(67.6%)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1,673명인데 비해 가해자의 수가 1,914명으로 더 많은 것은 한 명의 피해자에게 여러 명이 가해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및 친인척은 전체의 15%이며, 피해자와 성폭력사건 발생이전부터 가족이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평소 알고 있는 가해자는 전체의 67.6%를 차지한다.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잘 알고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채팅상대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하는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 여성이다. 지적 장애인은 채팅을 통해 만난 가해자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성폭력에 노출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의 연령(단위:명)

계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5세 미만	65세 이상	미파악
1,914 (100%)	-	21 (1%)	212 (11%)	865 (45%)	291 (16%)	525 (27%)



장애인 대상 성폭력 가해자는 성인이 대다수이지만 고령의 가해자가 16%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가 노인층이 많은 것은 쉽게 유인되는 지적장애 여성의 장애특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6.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피해유형(단위:명)

계	강간 및 유사강간	성추행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전화	기타
1,673 (100%)	992 (59.4%)	592 (35.3%)	-	11 (0.6%)	2 (0.1%)	76 (4.6%)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 유형은 강간 및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이 94.7%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나 통합센터에서 신고 된 사례가 상담소에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이버나 음란전화의 피해 사건이 적은 것은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것이 '신고를 해야 하는 피해'라는 인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표7. 장애인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현황(단위:건)

계	심리정서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입소 지원	전학 지원	기타
15,668 (100%)	6,603 (43%)	4,227 (27%)	591 (4%)	765 (5%)	2	3,336 (21%)



2013년 한 해 동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15,668건을 지원했으며,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상담활동과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을 통해 성폭력사건에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을 하고 있다. 기타 지원의 영역에는 장애인피해자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활동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피해자와 동행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한다. 피해자와 동행하고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활동은 표면적으로 성폭력상담소의 '공식적인 업무'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활동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참고문헌

2002. 윤가현. 「정신지체장애와 성」, 전남대학교
2003. 김한경·박용숙.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나눔의 집
2005. 「공감」 8호, 장애여성공감
2006. 「장애여성공감 교육과정 자료집」, 장애여성공감
2007. 「정신지체 아동 성 바로 알기」, 경원사회복지회
2008. 정진옥. 「지적장애 성인이 이성교제에서 경험하는 성과 사랑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Dorothy M.Griffiths 외. 「윤리적 딜레마 : 성과 발달장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9. Leslie Walker-Hirsch. 「지적 장애인의 성교육 그리고 그 너머의 빛」, 시그마프레스
Eric J. Mash & David A.Wolfe. 「아동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장애인 생활시설 내 발달장애 여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장애여성공감
2010. Erik Bosch. 「지적 장애인의 성에 대한 이해와 성교육 지도」, 박학사
활동보조 인권지침서 「이것부터 시작해요!」, 장애여성공감
2011.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발표회」, 장애여성공감
2012.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전문과정 자료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복실. 「거주시설 성인 지적 장애인의 자기결정요인 연구 -
기회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민병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연구」 제32권 제1호
「장애인 성폭력·성교육강사 양성과정 자료집」, 경원사회복지회
장애여성 독립생활 가이드북 「나의 독립찾기」, 장애여성공감
2013. 「장애여성운동, 15년 동안의 사고」, 장애여성공감
2014. 「공감」 12호, 장애여성공감

본 교육자료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센터 대표 연락처 02-3156-6013, 6130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법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법절차 흐름도



**피해(의심)
장애인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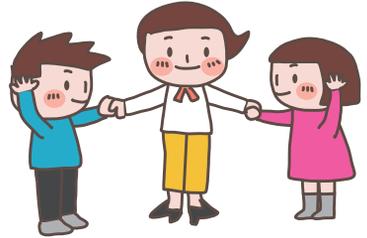
피해자가
피해 사실
발고

주변사람이
피해
의심, 인지

**전문기관에
상담 및 문의, 신고의무
이행**

* 112번, 1366번 또는
실천편 91p 전문기관
리스트 참고

3심(상고) : 대법원
↑
2심(항소) : 고등법원
↑
1심 : 지방법원



기소



**검찰
수사 후
처분**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담당형사
의견서, 사건 기록
서류 제출)**

혐의없음
죄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각하
타기관이송
소년부송치

불기소

항고
↓
재항고



**피해자, 보호자
상담**



고소 안함

피해자, 가족 상담, 의료적 지원,
피해자 치료 및 회복프로그램,
쉼터 입소, 민사소송,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등



고소 결정(피해자, 보호자)

원스톱센터 진술녹화, 경찰·검찰에 고소(서면, 구두, 우편 등),
법률 조력인, 진술 조력인, 무료법률구조 신청

고소인(피해자, 보호자) 조사

수사, 증거수집, 참고인 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귀가조치 소환수사

↑
불구속

↓
구속

구속영장 유치장 입감



범죄 혐의 인정



혐의 없음

훈방조치
↓
사건종결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

성폭력 예방의 시작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인식이
함께 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장애인과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시설종사자, 부모, 다양한 지원자들에게 이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장애인을 그 자체로서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노력이 있어야만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첫걸음, 장애인 시설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교육 매뉴얼]이 함께합니다.